##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7. 7. 20. 행정자치위원회

## I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7년 7월 2일
강태원 의원외 6 인
(연만흠, 박재국, 이필용, 김환동, 조영재, 이종호)
나. 회 부 일 자 : 2007년 7월 4일
다. 상정 및 의 결일자
제 262 회 충청북도의회(정례회) 제 5 차 행정자치위원회(2007. 7.
19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•토론, 심사의결(원안)

## II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강태원 의원)

## 1. 제안이유

가. 자치입법 과정의 단계별 심사기준을 구체적•실질적으로 규정하 여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입법을 사전예방하고
나. 입법예고, 공포 등 개별 자치법규로 나누어져 있던 입법체계 관 련규정을 통•폐합하여 입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- 충청북도조례안사전예고제시행지침(훈령 제01162호)
- 충청북도조례•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(조례 제02564호)


## 2. 주요내용

가．입법예고（안 제 4 조 $\sim$ 안 제 10 조）
（1）예고문 작성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（안 제5조）과 관련기관 또는 부서의 협의（안 제 10 조）신설．
（2）입법과정의 민주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청회 제도 도입（안 제9조）．
※ 현행「충청북도조례안사전예고제시행지침（훈령 제01162호）」
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 조례에 통합하였음．
나．입법안 작성 및 심사（안 제11조 및 안 제12조）
（1）자치법규 체계•형식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「충청북도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（별표）」 마련．

다．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（안 제13조～안 제19조）
（1）도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는 공포한 날부터 30 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도민 의 권익보호（안 제 18 조）．
（2）자치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시행전 관계공무원 교육，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조치를 하도록 함（안 제19조）
※ 현행 「충청북도조례•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（조례 제02564호）」의 일 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이 조례에 통합．

라．자치법규의 정비（안 제20조 및 안 제21조）
（1）자치법규 제정 후 1 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치법규를 평가하 고，그 결과를 자치법규에 반영조치하도록 함．（안 제20조제1항）．
（2）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자치법규를 정기적으로 정비하도록 함（안 제20조제2항）．

## III．검토보고 요지

（행정자치전문위원 고일준）

## $\square$ 제정사유 및 주요내용

○ 본 조례안은 도 정책수행의 기본이 되는 법제업무 관련규정이 조례• 훈령 등의 각종 형태로 산재되어 있고, 통일적인 법 규정이 결여되어 있어 행정의 비능률은 물론 도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
$\bigcirc$ 이와 관련된 법제업무 관련규정을 보완•종합하여 단일 조례로 제정 함으로써 법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정책수행의 효율화 와 도민의 권익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내용에는 이견이 없음.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생략"
V. 토론요지 : "생략"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.
VII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 IX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O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안.

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안

제 1 장 총칙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며 자치법규 내용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정의 신뢰성 제고와 도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"자치법규"라 함은 충청북도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.
2. "입법"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•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.
3. "입법예고"라 함은 도민의 권리•의무 또는 다수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 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,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기본원칙) (1)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에 규정 된 국가규범을 준수하면서 충청북도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.
(2)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도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•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관련되는 공익과 도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장 입 법 예 고
제4조(입법예고 대상)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자치법규를 입 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

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.

1.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
2.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
3.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

제5조(예고문 작성) (1)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야 한다.

1.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
2. 입법취지
3. 입법 주요내용
4.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
5. 기타 필요한 사항
(2)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 야 한다.

제6조(예고방법) (1)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도보 및 인터넷에 게재 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.
(2)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1 항의 방법외에 관보•신문. 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.
(3)도지사는 당해 입법예고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 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.

제 7 조(예고기간)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도지사가 정하되,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20 일 이상으로 한다.

제8조(의견제출 및 처리) (1)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 든지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(2)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•결정하고,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9조(공청회) 도지사는 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 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 10 조(협의 등) 도지사는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, 법령 또는 자치 법규 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의 협의,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 우에는 그 협의,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.
제3장 입법안 작성 및 심사

제 11 조(입법안 작성)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할 때에는 자치법규 제정의 필 요성,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등을 감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
제 12 조(입법안 심사) (1)제 1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입법안은 별표의 「충 청북도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」에 의하여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(2)입법안을 심사하는 때에는 자치법규의 성격 및 내용에 따라 각 입법절 차단계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별적으로 적용하여 심사할 수 있다.

## 제4장 자치법규 공포 및 시행

 제 13 조(전문) (1)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.(2)조례의 전문에는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충청북도지 사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.
(3)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충청북도지사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연월일을 기입한다.

제 14 조(번호) (1)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.
(2)제1항의 번호는 조례,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.

제 15 조(공포방법) 자치법규는 도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.
제 16 조(공포일)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도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.
제 17 조(시행일) 자치법규는 당해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 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.

제 18 조(자치법규의 시행유예기간) 도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는 공포한 날부터 30 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 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 19 조(사전교육 등) 도지사는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자치법규의 시행이전에 관계공무원의 교육, 관련 소속기관에 대한 공포 내용의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 제5장 자치법규의 정비

제 20 조(자치법규 정비) (1)도지사는 제정 공포된 자치법규의 시행 후 1 년이 경과한 때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 여야 한다.
(2)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.

1.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후 오랜 기간동안 수정•보완되지 아니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
2. 상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
3.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절차 등으로 도민에게 불편 을 초래하게 하는 경우
4.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도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의 재검토•정비가 필요한 경우

제21조(입법의견 제출) (1)누구든지 자치법규의 정비•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.
(2)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검토한 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(3)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안에 반영된 의견이 도의 정책결 정•재정증대 등 시정에 공헌한 경우에는 의견제출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. 제2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(1)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(2)(입법진행중에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입법예 고 등을 하여 입법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(3)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「충청북도조례•규칙등공포 에관한조례」는 이를 폐지한다.
[불표]

## 충청북도 자치입법 입안 <br> 심사기준(제12조관ㄹㄹ)

충 청 북 도

## I．자치법규의 체계（體系）

## 1．자치법규의 제명（題名）

## 가．제명을 표현하는 방식

○ 자치법규의 제명은 법규의 내용을 요약하여 간결하게 작성하며，필요할 때에는 ＂등＂또는＂•＂을 사용하여도 무방하나，제명이 긴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＂등＂ 을 사용하기 보다는 주된 내용을 대표하는 것을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．
$\bigcirc$ 일반적으로 조례의 제명은 ${ }^{「} \mathrm{OO}$ 조례」또는 ${ }^{\mathrm{r}} \mathrm{OO}$ 에 관한 조례」로 하고，규칙의 제명은 「 OO 조례 규칙」또는 「 OO 에 관한 조례 규칙」등으로 한다．

## 나．제명의 띄어쓰기

○ 법령 제명의 경우 2004년까지는 법제처의 「법령입안심사기준」및 국회의「국 회법률안입안기준」에서 한글 맞춤법의 예외로 인정함에 따라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 써 왔고，자치법규의 경우에도 법령의 영향을 받아 그 동안 제명을 모두 붙여서 표시하여 왔다．

○ 그런데，종전의 관행은 법령 제명에 포함된 조사，어미，부사 및 의존명사에 이 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붙여 쓰고 있어 어문규범의 일반원칙에 어긋나고，가독성 （可讀性）이 현저히 떨어져 일반국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관계로 법제처에서는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2005년 1월 1일 이후 제•개정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있고，지방자치단체도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자치 법규의 제명도 점차 띄어쓰기를 하고 있다（예 ：「 OO 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에 관한 조례」）．

## ＜법령제명 띄어쓰기의 기준＞

## I．법령제명 띄어쓰기의 기준

1．법령명은 단어 별로 띄어 쓴다．
○ 법령명에 포함된 조사 뒤，어미 뒤，부사 앞뒤，의존 명사 앞（의존 명사 뒤에 조 사가 오지 않으면 의존 명사 뒤에서도 띰）에서 반드시 띄어쓰기로 표기한다．
○ 조사，어미，부사，의존 명사가 없이 명사（복합명사）만으로 이루어진 법령명은 최 대 8 음절까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．
※ 국립국어연구원의 의견에 의하면，보통 사람이 한 번에 독해할 수 있는 적정 한 음절의 수는 8 음절 내외라고 함．

2．예외적으로 8 음절을 초과하는 복합명사로 이루어진 조직 또는 단체（공단，공사， 조합 등）및 기금의 명칭을 포함하는 법령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고，하나의 명사로 인식되는 것이 통례이므로 붙여 쓴다．
예시）대한민국재향군인희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
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
공공자금관리기금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
3．＂시행령＂，＂시행규칙＂，＂규정＂등 도 하나의 명사의 성격을 갖고，＂법률＂의 제명과 같이 붙여 쓰는 경우 8음절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，＂법률＂과 달리＂시행 령＂，＂시행규칙＂은 띄어쓰기로 표기한다．

4．법령의 본문 중에서 다른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명 앞뒤에 낫 표（「」）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．

○ 일반 본문의 문장 내용과 구분할 수 있고，법의 고유명사로서의 특성을 표시하 기 위하여 낫표를 사용한다．이는 법령명의 띄어쓰기로 인하여 하나의 고유한 법령명이 아닌 어떤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로 오해될 소지를 방지하기 위 한 것임．（예컨대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법률 $\leftarrow$ ‘액화석유가스에관한법률’이 아 닌＇액화석유가스＇에 관련된 일반적인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될 우려）
○ 띄어쓰기 대상이 아닌 붙여쓰기로 표기하는 법령의 경우에도 본문에서 인용되 는 경우 예외 없이 앞뒤에 낫표를 사용한다．
예시）「민법」，「증권거래법」，「도로교통법」
○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명이 아닌 경우，즉 법령집에서의 법령 제목，개정지시문， 의결주문，공포문 등에서는 낫표를 부기하지 아니한다．
예시）
－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［전부］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．（개정지시문）
－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［전부개정］법률안을 별지와 같 이 의결한다．（의결주문）
－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［전부개정령］을 이에 공포 한다．（공포문）

## II．제명 띄어쓰기 표기의 예시

1．조사와 어미를 포함한 법령명
$\bigcirc$ 실화책임에관한법률 $\rightarrow$ 「실화책임에 $\vee$ 관한 $\vee$ 법률

2．부사를 포함한 법령명
$\bigcirc$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$\rightarrow$ 「박물관 $\vee$ 및 $\vee$ 미술관 $\vee$ 진흥법
※＇미술관진흥법＇은 모두 명사이지만，‘진흥법＇이＇박물관＇과＇미술관＇양쪽에 걸리는 성분이므로，‘미술관＇과 ‘진흥법＇을 띄어 쓰도록 함．

3．의존 명사를 포함한 법령명
$\bigcirc$ 옥외광고물등관리법 $\rightarrow$ 「옥외광고물 $\vee$ 등 $\vee$ 관리법」

4．부사，의존 명사，조사，어미를 포함한 법령명
○ 가정폭력 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
$\rightarrow$ 「가정폭력방지 $\vee$ 및 $\vee$ 피해자보호 $\vee$ 등에 $\vee$ 관한 $\vee$ 법률
○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호에의한시설과구역 및대한민국에있 어서의 합중국 군대의지위에 관한협정의 시행 에 따른국가및지 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 리와처분에관한법률
$\rightarrow$ 「대한민국과 $\vee$ 아메리카합중국 $\vee$ 간의 $\vee$ 상호방위조약 $\vee$ 제 4 조에 $\vee$ 따른 $\vee$ 시설과 $\vee$ 구역 $\vee$ 및 $\vee$ 주한미군의 $\vee$ 지위에 $\vee$ 관한 $\vee$ 협정의 $\vee$ 시행에 $\vee$ 따른 $\vee$ 국가 $\vee$ 및 $\vee$ 지방자치단 체의 $\vee$ 재산관리와 $\vee$ 처분에 $\vee$ 관한 $\vee$ 법률」

5．8음절을 넘는 명사로 이루어진 법령명
$\bigcirc$ 일제강점하친일 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
$\rightarrow$ 「일제강점하 $\vee$ 친일반민족행위 $\vee$ 진상규명에 $\vee$ 관한 $\vee$ 특별법

○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운영등에관한법률
$\rightarrow$ 「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$\vee$ 설립 $\vee$ 및 $\vee$ 운영 $\vee$ 등에 $\vee$ 관한 $\vee$ 법률」（※ ‘수도권매립지 관리공사＇의 경우 10 음절이나，하나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복합명사이므로 예외적으 로 붙여 쓰기 인정）

## 2．본칙（본칙）과 부칙（附則），장（章）－절（節）등의 구분

## 가．본칙（本則）과 부칙（附則）의 구분

○ 법령은 물론이고 자치법규도 본칙（本則）과 부칙（附則）으로 구성된다．본칙（本則）은 법령의 본체가 되는 부분이고，부칙（附則）은 본칙에 부수하여 법령의 시 행일，적용관계，기존의 법률관계와 새로운 법률관계간의 연결 및 조정관계，새 로운 법률과 모순•저촉되는 기존법령의 개폐 등을 정하는 부대적（附帶的）부분 이다．

○ 부칙과 구별되어야 할 것으로 보칙（補則）이 있다．보칙은 일반적으로 본칙 중에 서 보충적 규정을 정하는 부분의 장（章）이나 절（節）의 제목으로 사용된다．본칙 부분에 대하여는 본칙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하나 부칙부분은 맨 앞에 반드시 부칙이라고 표시한다．

## 나．장（章）－절（節）의 구분

○ 자치법규 본칙의 조문수가 많고（통상 조문수가 30 조 이상이 되는 경우）이를 그 성질에 따라 몇 개의 군（群）으로 나누는 것이 법문의 이해에 편리한 때에는 이를 몇 개의 장（章）으로 구분할 수 있다．장은 다시 절（節）•관（款）•목（目）의 순서로 세분할 수 있다．특히，조문수가 많은 경우에는 장（章）위에 편（編）을 둘 수 있다．

○ 장•절 등의 구분은 본칙규정에 한정되고，부칙에서는 장•절 등으로 구분하지 아 니한다．장•절 등을 둘 경우에는 그 장•절 등의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제목을 붙인다．

## 3．조문（條文）및 서식（書式）등

## 가．조（條），항（項），호（號），목（目）등의 구분

○ 자치법규를 입안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는 「사무관리규정」（대통령령）상 법 규문서로 분류되고 있으며，「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」（총리령）은 제3조제1호에서 ＂법규문서는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고，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．＂고 규정하 고 있기 때문에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에는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의 경우와 같이 반드시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．

○ 조문형식이 어떠한 형식인지에 관하여 법령상 명시된 것은 없으나，일반적으로 규정내용을 조•항•호•목으로 구분하여 기술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해되고 있다．다시 말하면，규정내용은 우선 조（條）로 나누어 작성하되，조의 내 용을 보다 세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를 항（項）으로 세분하고，항의 내용 을 보다 세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항을 호（號）로 세분하며，호의 내용을 보 다 세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호를 다시 목（目）으로 세분하여 작성하는 형식 이 바로 조문형식인 것이다．
※ 조（條）는＂제 1 조，제 2 조，제 3 조＂등으로 표기하고 $(\S 1, \S 2, ~ § 3$ 으로 표기하기도 한 다），인용할 때에도＂제 1 조，제 2 조，제 3 조＂등으로 인용한다．항은＂（1），（2），（3）＂ 등으로 표기하되，인용할 때에는＂제1항，제2항，제3항＂등으로 인용한다．호는 ＂1．，2．，3．＂등으로 표기하되［（i），（ii），（iii）으로 표기하기도 한다］，인용할 때에 는＂제 1 호，제 2 호，제 3 호＂등으로 인용한다．목은＂가．，나．，다．＂등으로 표기하되， 인용할 때에는＂가목，나목，다목＂등으로 인용한다．

○ 현행 법규는 모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는데，예를 들면 다음과 같 다．

제6조（기준정원의 책정）（1）지방자치단체의 적정한 정원의 범위（이하＂기준정원＂이라 한다）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책정한다．
1．서울특별시의 기준정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． 공무원수 $=[-20,573+(0.00329 \times$ 인구수 $)] \times 1.10$
2．－3．（생 략）
4．시의 기준정원은 별표 1 ，군의 기준정원은 별표 2 의 산식에 의하며，자치 구 （이하＂구＂라 한다）의 기준정원은 다음 각목의 산식에 의한다．
가．서울특별시의 구
공무원수 $=[613.02082+(0.00036 \times$ 인구수 $)+(24.53364 \times$ 행 정동의 수 $)] \times 1.05$
나．광역시의 구
공무원수 $=[613.02082+(0.000509 \times$ 인구수 $)+(11.8097 \times$ 행정동의 수 $)] \times 1.05$
（2）～（4）（생 략）

○ 그러나 부칙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조문형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 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．즉，부칙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항으로 구분（호，목으로 세분 가능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，항의 수가 5 개를 넘거나 항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로 구분（항，호，목으로 세분 가능）하도록 하고 있다．그런데 실무상으로는 대부분의 법규의 경우에 있어서 부칙에 규정할 사항 이 시행일규정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부칙에 조•항에 관한 아무런 구분 표시 없이 시행일만 규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．

## ＜부칙규정형식의 예시＞

```
i) 하ᄋ으로 구부ᄂ하ᄂ 겨ᄋ우
(1)(시해ᄋ이ᄅ)
(2)(겨ᄋ과조치)
ii) 조로 구부ᄂ하ᄂ 겨ᄋ우
제1조(시해ᄋ이ᄅ)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제2조(다르ᄂ 조례의 폐지)
제3조(○○에 과ᄂ하ᄂ 겨ᄋ과조치) (1)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    (2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제4조(○○䜣 과ᄂ하ᄂ 겨ᄋ과조치)
제5조(다르ᄂ 조례의 개저ᄋ)
iii) 조•하ᄋ의 표시가 어ᄡ느ᄂ 겨ᄋ우
이 조례느ᄂ 고ᄋ포하ᄂ 나ᄅ부터 시해ᄋ하ᄂ다.
```

○ 한편，조문수가 많은 법규의 경우에는 본칙의 여러 조가 장•절로 구분되어 있 는 경우도 있다．장의 경우에는 장명（章名）을 붙이게 되는데，장명은 일반적으 로 총칙，본칙（실제로는 본칙이라고 하지 않고 당해 장의 내용을 요약한 내용을 장명으로 한다），보칙，벌칙 등의 순으로 붙인다．

○ 장（章）은 다시 절（節）• 관（款）의 순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，장의 수가 많은 경 우에는 장의 위에 편（篇）을 둘 수 있다．또한，본칙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문장 으로 표시하기 곤란하거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별표 또는 별지서식으로 하여 부칙 다음 페이지에 작성할 수 있다．

요약하면，법규안의 형식은 법규형식 • 공포번호와 제명부분을 제외하면 크게 본칙 과 부칙（부칙 다음에 별표 또는 별지서식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다）으로 나뉘는 바， 본칙은 조•항•호•목의 순에 의한 조문형식으로 작성하되，조문수가 많은 법규의 경우에는 여러 조를 장•절로 적절하게 구분할 수 있고，부칙의 경우에는 항으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，항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 등에는 조로 구분할 수 있다．

## 나．조문（條文）의 제목 및 내용표기

○ 자치법규의 조문（부칙이 항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항）에는 그 조문이 무엇에 관 하여 규정하고 있는 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자치법규의 내용을 찾 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문의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여 제○조 바로 다 음에 괄호를 하여 제목을 표시하되，한 조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규정하여 그 내용을 요약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조문의 제목을＂（ $\bigcirc \bigcirc$ 등）＂이라고 표시한 다．

○ 조문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문장으로 표기하되，문장으로 표기하기가 곤란한 경 우 또는 문장으로 표시하더라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식，표 또는 그 림으로 표기할 수 있고，규정할 사항의 종류，성질，분량 등을 고려하여 당해 조 문에서 바로 규정하기가 곤란하거나 조문내용이 복잡하게 될 경우에는 부칙 다 음에 별표（別表），별도（別圖），부도（附圖），별지서식（別紙書式）등을 만들어 사 용한다．

## 다．인용조항의 표시

## （1）당해 자치법뀨를 인용할 경우

○ 동일 자치법규에서 그 자치법규 중 다른 조항을 인용할 경우에는＂이 조례＂， ＂이 규칙＂등의 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，바로＂제○조제○항＂，＂제○조제 $\bigcirc$ ○호＂，＂제○조제○항 내지 제○항＂등과 같이 인용되는 조항만을 표기한다．

## （2）다른 자치법규를 인용할 경우

○ 자치법규 중에서 다른 자치법규의 조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다른 자치법규의

제명（題名）과 조항（條項）을 함께 표기하되，2이상의 조항을 인용할 경우에는 ＂○○조례 제○조•제○조 및 제○조＂와 같이 다른 법령의 제명（題名）처음 나올 때에만 표기한다．
（3）당해 법령과 다른 법령을 동시에 인용할 경우
$\bigcirc$ 당해 자치법규와 다른 자치법규의 조항을 동시에 인용할 경우에는 혼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도록＂○○조례 제○조•제○조 및 제○조와 이 조례 제○ 조＂라고 표기한다．

## （4）부칙규정에서의 조문인용

○ 부칙규정에서 당해 자치법규의 본칙규정을 인용할 경우에는＂본칙 제○조＂ 라고 표기하지 아니하고 본칙（本則）의 조문만을 명시하고，당해 법령의 다 른 부칙규정을 인용할 경우에는＂부칙 제○조＂라고 표기하여 본칙규정을 인 용하는 경우와 구별한다．
（5）조문에 나열된 각 호 중 일부를 인용하는 경우의 표현방식
$\bigcirc$ 조문에 각 호（예컨대 제 1 호 내지 제 5 호）가 얼거되어 있고 다른 부분에서 각 호 중 일부（예컨대 제1호 내지 제3호）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하고자 하 는 내용만을 표기하여＂제 1 호 내지 제 3 호의 어느 하나에＂로 표현하고，＂제 1 호 내지 제3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＂로 표현하지 아니한다．

```
제○조(제모ᄀ) 다으ᄆ 가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다ᄋ하느ᄂ 겨ᄋ우에느ᄂ ---- 하ᄂ다. 다마ᄂ, 제1호 내지
   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다ᄋ하느ᄂ 겨ᄋ우에느ᄂ ---하ᄅ 수 이ᄊ다.
    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    2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    3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    4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    5.
```


## 라．별표，별지서식

（1）별표，별지서식의 표기방법
○ 별표 또는 별지서식의 제목에서는＂［별표］＂，＂［별지서식］＂으로 하고，법 령문 안에서 인용할 때에는＂［ ］＂를 하지 아니하고＂별표＂，＂별지서식＂으 로 한다．

## （2）별표의 제목

○ 별표의 제목에는 본칙의 관련 조•항을 괄호 속에 부기（附記）한다（예컨대 ＂제○조 관련＂）．

## ［별표 1］

```
OOO에 과ᄂ하ᄂ 기주ᄂ(제O조 과ᄂ려ᄂ)
```


## （3）별표상의 기호표시 방식

○ 별표에서 규정할 내용이 많을 때에는 적절한 기호를 사용하여 내용을 구분 하여 주는 것이 좋은데，참고로 법령의 경우에는＂1．，가．，（1），（가）， 1 ）， 가）＂의 순서로 표시하고 있다．

```
[벼ᄅ표 1]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OO에 과ᄒ하ᄂ 기주ᄂ(제O조 과ᄂ려ᄂ)
1.
가.
    (1)
    (가
    1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        가) ---------
```

    ㅍ. 자치법규의 개정(改定)•폐지(廢止) 방식
    
## 1．기본원칙

○ 법규를 제정한 후에 그 법규를 개정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일까？
○ 이 경우에도 법규제정의 경우와 똑 같이 기존 법규의 개정 또는 폐지를 목적으 로 하는 법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．

## 2．부분개정과 전문개정

○ 기존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분개정의 방법을 택하되，개정되는 조문수가 $2 / 3$ 이상인 경우，용어•가지번호 등에 관한 전체적 정비가 필요한 경우 또는 당해 조례나 규칙의 핵심부분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개정의 방식을 택한다．

## 3．전문개정과 폐지•제정（代替立法）

○ 조례나 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개정의 방식과 폐지•제정 （대체입법）의 방식 중 어느 방식을 택할 지 여부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．신• 구 자치입법 간 제도상 동질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개정방식을 취하고，제도 자체가 전면적 또는 본질적으로 변형되는 경우에는 대체입법방식 을 취한다．

## 4．여러 조례의 일괄개정

○ 조례 개정시에는 개정대상 조례별로 개정조례의 입법을 따로 추진하는 것이 원 칙이나，하나의 조례로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방식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．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방식은 극히 제한된 요건 하에서만 사용되 는 방식으로서 한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등 경미한 사항의 정리적 개정이 필요한 경우（예：$○ ○$ 국 $\rightarrow \triangle \triangle$ 국）에는（1）개 정조례의 부칙에서 관련조례를 일괄 개정하거나（2）관련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일괄개정하는 방식（예： A 조례의시행에따른 B 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）을 사용할 수 있다．
$\bigcirc$ 또한，정책의 일괄실시를 위하여 $\mathrm{A} \cdot \mathrm{B} \cdot \mathrm{C}$ 조례 등 관련조례의 일괄개정이 필요 한 때에는 당해 정책과 관련되는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일괄개정하는 방식（예： A 조례등중개정조례 또는 A 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）을 사용할 수 있다．

## II．자치법규입안의 실제（實際）

○ 자치법규의 개정방식（부분개정 or 전문개정）또는 폐지여부를 결정하면 구체적 으로 개정안 또는 폐지안을 입안하여야 한다．아래에서는 자치법규안의 구성요 소와 개정안 또는 폐지안의 구체적인 입안방식을 상술하기로 한다．

## 1．자치법규안（自治法規案）의 구성요소

## 가．제안이유－주요내용•참고사항

○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문서로 하여야 한다．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제출연월일，제출자，제 안이유，주요내용 등을 기재한 제안서식에 조례안을 첨부하여야 하며，의원발의 조례안일 경우에는 발의연월일，발의자，제안이유，주요내용 외에도 찬성자와 연 서하여 서명날인한 찬성자명단（조례안발의 서명용지）을 첨부하여야 한다．

○ 규칙안의 경우에도 제정•개정 또는 폐지이유와 주요내용，참고사항 등을 표시 하여야 할 것이다．
＜제안이유•주요내용－참고사항 작성요령 예시＞
1．제안（폐지）이유
종전에는 양천구•노원구•강남구에 설치된 자원회수시설에서 다른 자치구의 생 활폐기물을 반입•처리하는 경우에는 시설소재지 자치구청장 및 주민지원협 의체와 합의하도록 되어 있고，마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，앞으로는 시설소재지 자치구청장．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도 록 그 절차를 통일함으로써 자원회수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．

2．주요내용
가．－－－－－－－－－（안 제 O 조 or 안 제 O 조 신설）
（1）
（2）
（3）

3．참고사항
가．관련법규： OO 법 제 O 조
（※ 관련조문이 많은 경우에는 별첨 가능）
나．예산조치 ：별도조치 필요 없음（＇06년도 예산）
다．기 타
（1）신 • 구조문대비표 ：별첨 $1(\mathrm{O}$ 쪽 $\sim O$ 쪽 $)$
（2）입법예고（2005．8．23～9．7）결과，별첨 2（O쪽～O쪽）
（3）규제심사 ：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，이견 없음

> - 규제신설•폐지 등 : 없음
> (or) - 규제신설 : 3건

## 나．법규형식 및 공포번호

○ 법규형식 및 공포번호는 당해 법규의 법규형식별로 붙이는 누년 일련번호를 말 하는데，법령의 경우 법령문 첫 페이지 좌측상단에는＂법률＂，＂대통령령＂，＂총리 령＂，＂행정자치부령＂등으로 법형식을 기재하고，공포번호란을＂제 호＂형식 으로 기재한다．
$\bigcirc$ 자치법규의 경우에도＂○○조례＂，＂○○규칙＂등으로 법규형식을 쓰고 공포번호 란은＂제 호＂형식으로 기재하여 번호부분은 공란으로 비워둔다．

## 다．제명（題名）

○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에는＂～조례안＂또는＂～규칙안＂으로 제명을 붙이며， 부분개정의 경우에는＂－－조례（규칙）일부개정조례（규칙）안＂，전문개정의 경우에 는＂－－조례（규칙）전부개정조례（규칙）안＂，폐지의 경우에는＂－－조례（규칙）폐지 조례（규칙）안＂의 형식으로 제명을 붙이면 된다1）．

## 라．개정（改定）또는 폐지（廢止）의 주문（主文）

○ 기존 조례（규칙）를 개정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명의 다음 줄에 부분 개정의 경우에는＂－－조례（규칙）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．＂，전문개정의 경 우에는＂－－조례（규칙）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．＂，폐지의 경우에는＂－－조례 （규칙）는 이를 폐지한다．＂의 형식으로 개정주문을 작성한다2）．

[^0]$\bigcirc$ 제정의 경우에는 제정주문을 작성하지 아니한다．

## 마．본칙（本則）

○ 본칙 부분은 앞에서 설명한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．다 만，부분개정의 경우에는 개정주문의 다음 줄에 기존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의 개 정문을 조문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작성하되，

- 조문의 부분개정의 경우에는 『제－조중＂－－＂를＂－－＂로 한다．』，
- 조문의 전문개정의 경우에는 『제－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．』，
- 조문의 폐지의 경우에는 『제－조를 삭제한다．』，
- 조문의 신설의 경우에는『제－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．』의 형식으로 조문의 개정문을 작성한다．


## 바．부칙（附則）

○ 부칙에는 시행일，유효기간，다른 법령의 폐지，적용례，경과조치，다른 법령의 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다．

## 2．제정 조례안

○ 기존에 없던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것을 조례의 제정이라고 하며，제정 조례안 은 제안이유，주요내용，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제안서식과 조례의 본체부분을 규정한 법령문으로 구성된다．법령문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．

## ＜제정조례안의 형식 예시＞

[^1]

## 3. 전문개정 조례안

○ 전문개정 조례안이란 기존 조례의 내용을 전체적(제명포함)으로 개정하는 내용 의 조례를 말한다. 전문개정조례안도 제안이유, 주요내용,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제안서식과 법규의 본체부분을 규정한 법규로 구성되며, 법규를 작성하는 방법 은 다음과 같다.
<전문개정조례안의 형식 예시>

| 법규형식 및 공포번호 | $\bigcirc \bigcirc$ 조례 제 호 |
| :---: | :---: |
| 제 명 | $0 \bigcirc \bigcirc$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(or $○ ○ ○$ 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) |
| 개정주문 | 000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|
| 본 칙 | $0 \bigcirc \bigcirc$ 조례 제1장 총칙 |
|  | 제 1 조(목적) <br> 제2조 $(\bigcirc \bigcirc)$ |
|  | 제2장 $\bigcirc \bigcirc \bigcirc$ |
|  |  |
| 부 칙 | (1) (시핵일) $\qquad$ |
|  | (2) (경과조치) |

## 4. 부분개정 또는 일부개정 조례안

○ 부분개정 또는 일부개정 조례란 기존 조례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내용 의 조례를 말한다. 부분개정조례안도 제안이유, 주요내용,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제안서식과 법규의 본체부분을 규정한 법규로 구성되며, 법규를 작성하는 방법 은 다음과 같다.

## <부분(일부)개정조례안의 형식 예시>

| 법규형식 및 공포번호 | ○○조례 제 호 |
| :---: | :---: |
| 제 명 | $0 \bigcirc \bigcirc$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(or $\bigcirc \bigcirc \bigcirc \bigcirc$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 |
| 개정주문 | $\bigcirc \bigcirc \bigcirc \bigcirc$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|
| 개 정 문 | 제명 " 000 조례"를 "---조례"로 한다. <br> 제2조중 "----"를 "----""로 한다. <br> 제3조제1항중 "-----"를 "------->로 하고, 동조 <br> 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<br> 3. <br> 제 7 조제 3 항을 삭제한다. |
| 부 칙 | $\qquad$ <br> (1) (시행일) <br> (2) (경과조치) $\qquad$ |

## <일부개정 조례안 신•구조문대비표 예시>



## <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의 개정문 예시>

OO 시자원회수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제명 "OO시자원회수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"를 "OO시 자원회수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"로 한다.
제1조중 "---"를 "---"로 한다.
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## 5. 폐지(噔止) 조례안

○ 폐지 조례안이란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말한다. 기존 조례를 폐 지하는 방식에는 (1)당해 조례의 폐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식과 (2)관련되 는 다른 조례의 부칙에서 폐지하는 방식이 있다. 조례 자체에 당해 조례의 유효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한시조례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경과와 동시에 자동 실호 되므로 폐지를 위한 별도의 입법을 요하지 아니한다.
○ 폐지조례안도 제안이유, 주요내용,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제안서식과 법규의 본 체부분을 규정한 법규로 구성되며, 법규를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.
<폐지법규안의 형식 예시>

| 법규형식 및 공포번호 | O○조례 제 호 |
| :---: | :---: |
| 제 명 | 00 O 조례 폐지조례안 |
| 폐지주문 | $00 \bigcirc$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 <br> 부 칙 |
| 부 칙 |  |
|  |  |
|  |  |
|  | 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(1)---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. <br> 제 O 조중 " $\qquad$ "를 $\qquad$ "로 한다. <br> (2)---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<br> 제 O 조중 $\qquad$ "를" $\qquad$ "로 한다. |

## 관계법령 발췌

## $\square$ <br> 지방자치법

제 26 조(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) (8)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$\square$ 지방자치법시행령

제14조(운영규정)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
[^0]:    1）법령의 경우 종전에는 개정법령명칭의 표기방식을 부분개정은＂$\square \square$ 법중개정법률안＂，전문개정은＂$\square \square$ 법개정법률안＂으로 표시하였으나，일반국민은 이러한 구분이 존재하고 이를 달리 표시한다는 것을 이해 하기 힘든 점이 있으므로， 2005 년부터는 개정법령명칭의 표기방식도 부분개정은＂$\square \square$ 법 일부개정법률 안＂，＂$\square \square$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＂，＂$\square \square$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＂으로，전문개정의 경우＂$\square \square$ 법 전 부개정법률안＂，＂$\square \square$ 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＂，＂$\square \square$ 법 시힝규칙 전부개정령안＂으로 표시하고 있다．

[^1]:    2）개정법령명칭의 표기방식을 부분개정은＂$\square \square$ 법 일부개정법률안＂으로，전문개정은＂$\square \square$ 법 전부개정법률 안＂으로 변경함에 따라 개정주문도 종전의＂$\square \square$ 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．＂（부분개정），＂$\square \square$ 법을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．＂（전문개정）를 각각＂$\square \square$ 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．＂（부분개정），＂$\square \square$ 법 전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．＂로 바꾸어 표기하고 있다．

